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

트러스톤 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투 자 신 탁 명	트러스톤 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8497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가나다순)	▪ 교보증권 (☎ 1544-0900, www.iproves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기업은행 (☎ 1566-2566, www.ibk.co.kr)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 대우증권 (☎ 1588-3322, www.beste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 동양종합금융증권 (☎ 1588-2600, www.myasset.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 메리츠증권 (☎ 02-785-6611, home.imerit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 삼성증권 (☎ 1588-2323, www.samsungfn.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 신영증권 (☎ 1544-8588, www.shinyoung.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우리투자증권 (☎ 1544-0000, www.wooriw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빌딩 ▪ 유진투자증권 (☎ 1588-6300, www.eugenefn.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 키움증권 (☎ 1544-9000, www.kiwoo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14층 ▪ 토러스투자증권(☎ 02-709-2300, www.tauru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3층 ▪ 현대증권 (☎ 1588-6611, www.youfirs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빌딩 ▪ HMC투자증권 (☎ 1588-6655, www.hmcib.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IBK투자증권 (☎ 1588-0030/1544-0050, www.ibk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 LIG투자증권 (☎ 1588-7600, www.ligstock.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빌딩3층 ▪ NH투자증권 (☎ 1588-4285, www.nhi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NH B/D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작 성 기 준 일	2009년 2월 25일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인터넷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 쪽)

- 명 칭 : 트러스톤 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84972)
-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종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추가형·종류형
- 자산운용회사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1~4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 *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비교지수는 트러스트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및 국내 주식의 가치변동, 채권의 가격변동 및 이자율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 등급 중 1 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주식 종목에 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trustonasset.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table><tr><th rowspan="2">성명</th><th rowspan="2">나이</th><th rowspan="2">직위</th><th colspan="2">운용현황</th><th colspan="2" rowspan="2">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th></tr><tr><th>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th><th>다른 운용 자산 규모</th></tr><tr><td>박재홍</td><td>39세</td><td>본부장 /팀장</td><td>-</td><td>-</td><td>99.01~01.03</td><td>교보증권</td></tr><tr><td></td><td></td><td></td><td></td><td></td><td>01.03~05.02</td><td>대신경제연구소</td></tr><tr><td></td><td></td><td></td><td></td><td></td><td>05.02~08.06</td><td>미래에셋자산운용</td></tr><tr><td></td><td></td><td></td><td></td><td></td><td>08.06~현재</td><td>트러스트자산운용</td></tr></table>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2본부 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임.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박재홍	39세	본부장 /팀장	-	-	99.01~01.03	교보증권						01.03~05.02	대신경제연구소						05.02~08.06	미래에셋자산운용						08.06~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박재홍	39세	본부장 /팀장	-	-	99.01~01.03	교보증권																																
					01.03~05.02	대신경제연구소																																
					05.02~08.06	미래에셋자산운용																																
					08.06~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7.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4~10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A 클래스	C 클래스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
	환매수수료 ¹⁾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75%	연 0.75%
		판매회사보수	연 0.90%	연 1.75%
		기타보수	연 0.047%	연 0.047%
		보수합계	연 1.697%	연 2.547%
	기타비용 ²⁾		실비	실비
	총보수·비용비율 ³⁾		연 1.697%+ 실비	연 2.547%+ 실비

- 주 1) 선취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30일미만, 90일미만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예상비용임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6.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투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분~오후 시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표지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
 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84972)	
2. 신탁계약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 분 류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투자신탁명	가입조건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A 클래스)	제한없음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C 클래스)	제한없음
4. 자산운용회사	트러스톤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8년 6월 27일 투자신탁 설정	
6.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7. 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지수 X 100%

(비교지수는 트러스톤자산운용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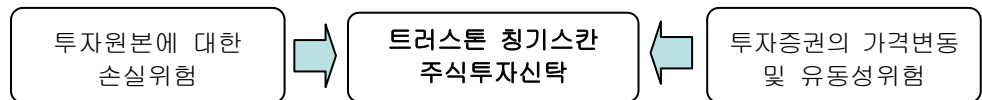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 (1)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2)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1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및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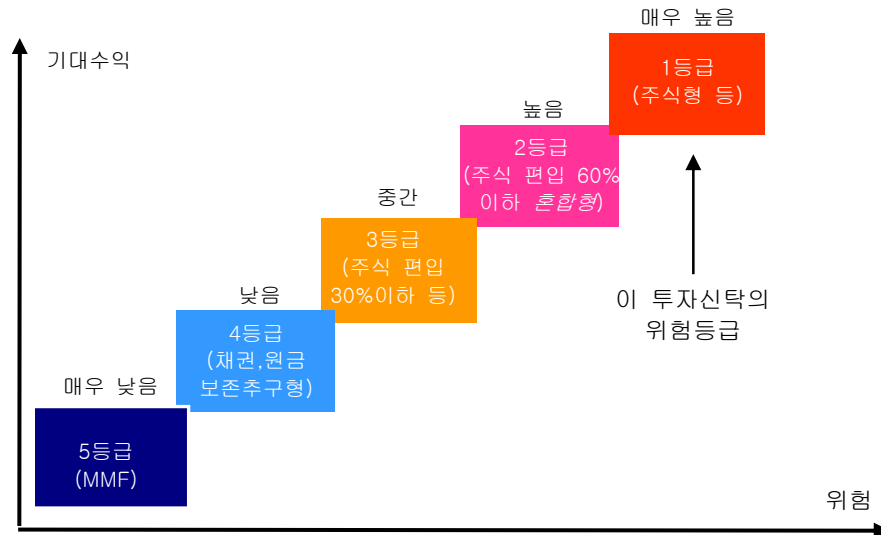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2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times 1,000$ 시세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times 1,000$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릅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trustonasset.com)·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재홍	본부장/ 팀장	- 99.01~01.03 교보증권 - 01.03~05.02 대신경제연구소 - 05.02~08.06 미래에셋자산운용 - 08.06~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2본부 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1페이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A 클래스	C 클래스	
선취 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	없음	매입시
환매 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 시 1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 %)		비고 (지급시기)
	A 클래스	C 클래스	
운용회사 보수	0.75%	0.75%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0%	1.75%	
수탁회사 보수	0.03%	0.03%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7%	0.017%	
기타비용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비율	1.697% + 실비	2.547% + 실비	

註)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 비율 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실제 운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2.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

1.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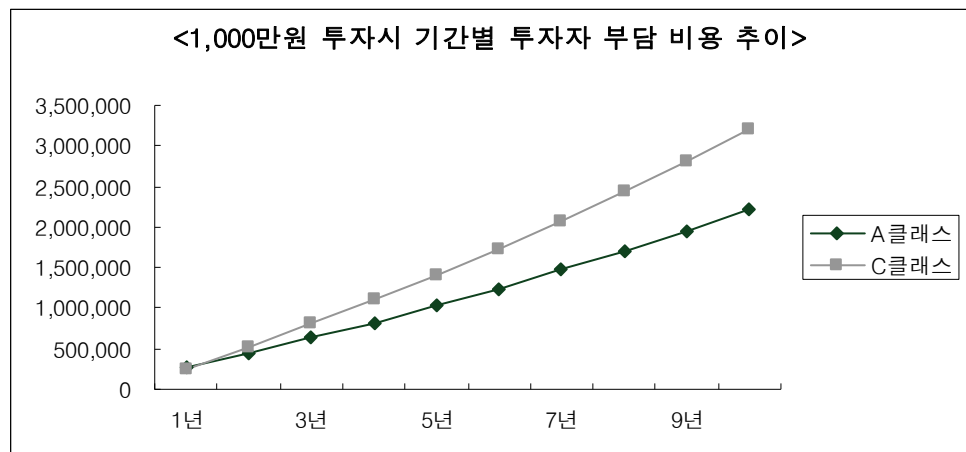
(단위 : 원)

투자기간	1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A 클래스	168,003	529,629	928,323	2,113,124
선취수수료 : 1,000 만원 X 1% = 10 만원				
C 클래스	254,700	802,942	1,407,378	3,203,58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2)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기간별 투자자 부담 비용 추이>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¹⁾

주1) 환급비율: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0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Mutual Fund, Reits, ETF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가) 일반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장기투자적립식 국내 주식형 펀드 과세율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혜택 시행일(2008.10.20)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 비과세)을 받을 수 있

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 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혜택 시행일(2008.10.20)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개인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개인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①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혜택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② 세제혜택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 년 이상으로 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만원, 연간 1,200 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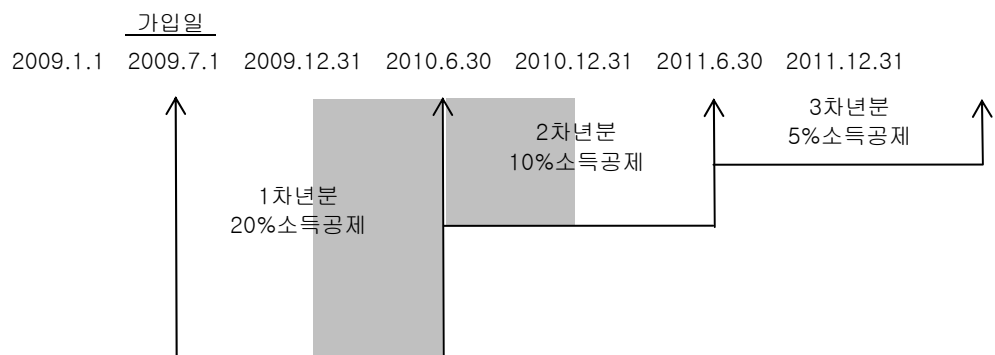
4. 소득공제 비율

- ①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②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③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①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②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혜택은 2008 년 10 월 20 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의 분배

1. 매입

(1) 매입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오후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나) 15시[오후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15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수령일

-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수령일

주1)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

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15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 일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입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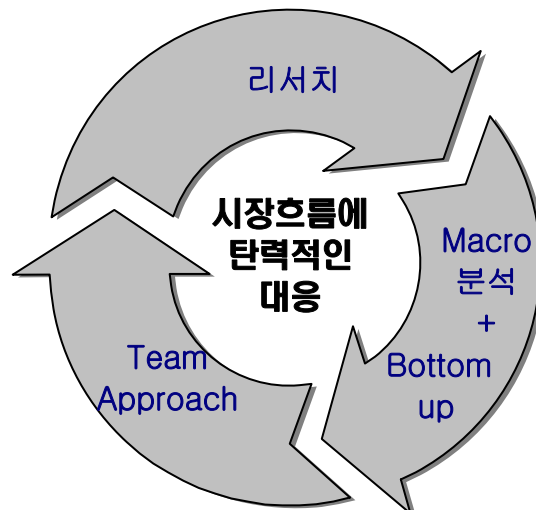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1)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 국내 주식에는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신주인수권 증서 등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신탁약관 제 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 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가치주 :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 * 성장주 : 수익 신장률이 높은 주식을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다지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 신제품·신기술 등이 수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도 성장주라고 합니다.
- ※ 상기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 기준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구분 기준은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운용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KOSPI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 60%이상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구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동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서 규정한 성질을 구비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②	채권	40% 이하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③	어음	40% 이하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신용등급 A3- 이상)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수익증권등	5% 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 이하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⑦	투자증권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⑨	투자증권의 차입	▶ 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20% 이하	
⑩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 파생상품	15%이하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 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 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가능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 세미나 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클래스 수익증권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C 클래스 수익증권 :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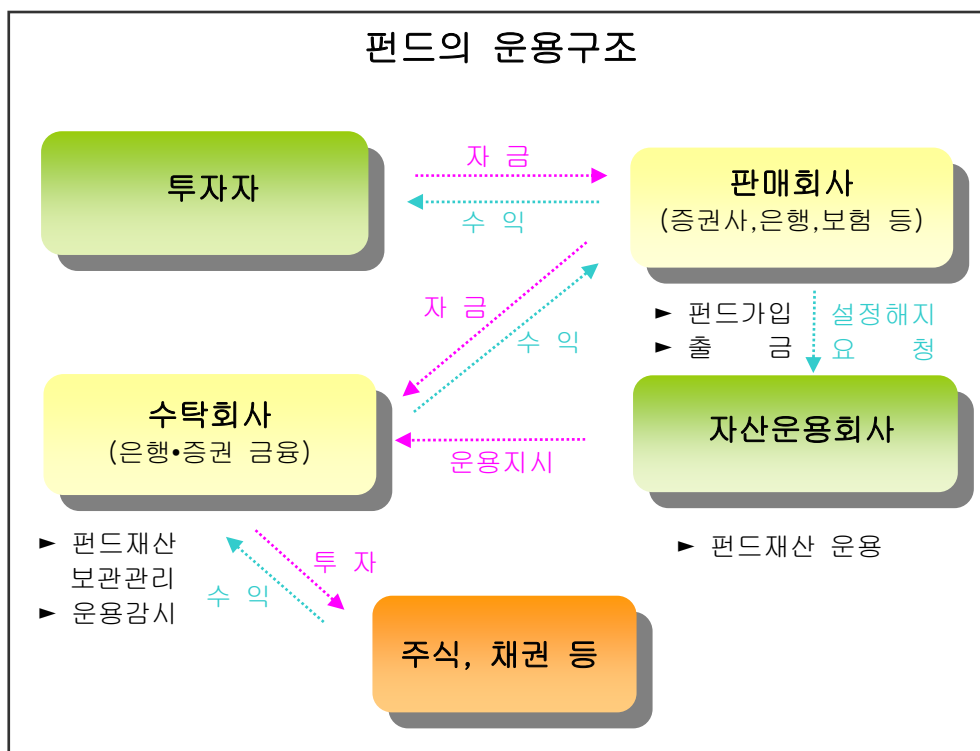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층 (02-6308-0500)

회 사 연 혁

일 자	연 혁
1998.04	IMM투자자문(주) 설립
2005.09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민연금 순수주식형 부문 우수 운용사 선정
2006.12	“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우정사업본부 순수주식형 부문 우수 운용사 선정
2007.06	순이익 1% 사회환원 이행 결의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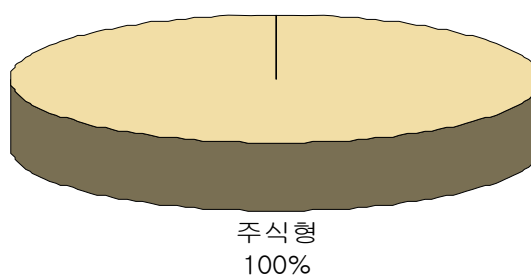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8.3.31	'07.3.31	항 목	'08.3.31	'07.3.31
유동자산	164	53	영업수익	201	88
비유동자산	85	45	영업비용	106	50
자산총계	249	98	영업이익	95	38
유동부채	32	17	영업외수익	9	1
비유동부채	-	-	영업외비용	2	-
부채총계	32	17	경상이익	102	39
자본금	106	50	특별이익	-	-
자본잉여금	2	-	특별손실	-	-
자본조정	1	-19	세전순이익	102	39
기타포괄손익누	-	-	법인세비용	21	11
계	108	50	당기순이익	81	28
이익잉여금	217	81			
자본총계	249	98			
부채와자본총계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12월 29일 기준, 단위 : 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205	-	-	-	-	-	-	-	205

유형별 운용자산규모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 명	나이 (년생)	직 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박재홍	39세	본부장/ 팀장	-	-	- 99.01~01.03 교보증권 - 01.03~05.02 대신경제연구소 - 05.02~08.06 미래에셋자산운용 - 08.06~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팀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2본부 1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펀드매니저입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	주소 및 연락처	연 혁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 1544-0900 - www.iprovest.com	1949.11.22 설립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 ☎ 1566-2566 - www.ibk.co.kr	1961.08 설립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4 - ☎ 1588-3322 - www.bestez.com	1970.09.23 설립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 ☎ 1588-2600 - www.myasset.com	1962.06 설립
메리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 ☎ 785-66111588-2600 - home.imeritz.com	1973.02 설립
삼성증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 ☎ 1588-2323 - www.samsungfn.com	1982.10.19 설립
신영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 1544-8588 - www.shinyoung.com	1956.02.25 설립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빌딩 - ☎ 1544-0000 - www.wooriwm.com	1969.01 설립

판매회사	주소 및 연락처	연혁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 - ☎ 1544-0000 www.wooriwm.com	1952.05.12 설립
키움닷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14층 - ☎ 1544-9000 - www.kiwoom.com	2000.05.04 설립
토러스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3층 - ☎ 02-709-2300 - www.taurus.co.kr	2008.07.25 설립
현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빌딩 - ☎ 1588-6611 - www.youfirst.co.kr	1962.06.01 설립
HMC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 1588-6655 - www.hmcib.com	1955.07.26 설립
IBK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 ☎ 1588-0030/1544-0050 - www.ibks.com	2008. 05 설립
LIG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빌딩3층 - ☎ 1544-7600 - www.ligstock.com	2008.01.30 설립
NH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농협문화복지재단 빌딩 - ☎ 1588-4285 - www.nhis.co.kr	2006년 2월 24일 설립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 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2073-7114)
회사연혁	www.kbstar.com 참조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② 책임 :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	2000.06.15 설립 2000.09.04 금융감독원 등록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주식회사	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잔여자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에 관한 사항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약관변경

- 신탁약관의 내용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수탁회사의 변경
 - ③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 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자산운용회사(www.trustonasset.com)·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 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 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용 어	내 용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말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종류형 (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채권형 (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채권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 (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최고 편입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주식혼합형, 50%미만인 경우는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추가형 (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탁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탁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 명칭 : 트러스톤 칭기스칸 주식투자신탁

☐ 판 매 일 : _____

☐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